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의 개요

고려대학교환경의학연구소
소장 차 철 환

I. 서 론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근로자 자신의 복지문제 뿐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에서, 인력관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현재와 같이 산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훈련된 인력의 확보란 자금관리, 시설관리, 시장 확보등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선순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건강관리란 실제로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단지 건강관리의 여러가지 내용중 모든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본적인 것이 주기적인 건강진단이라는 것만은 자명하다.

건강진단이란 문자 그대로 질병이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또는 증상이 심해지기 이전에,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조속히 치료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건강관리는 물론 타인에게 파급될 우려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개인이 독자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언급될 것은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집

단검진의 개념이다. 따라서 대상이 집단이기 때문에 검진내용도 대개는 획일화 되고 대상의 인격이나 인적특성이 무시될 수 있어, 비인간화된 의료이며 비효율적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불실검진이 논란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최근 서구 선진국에서는 多面的 檢査(multiphasic examination)라 하여 충분한 시간을 소요로 하되, 보다 심층적으로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시도도 일고 있으나 이것이 집단검진을 위한 신검에서 제도화 되지는 않고 있다. 즉, 나라마다 자기네 여건에 맞도록 나름대로 개선하여 규제하고 있다.

집단검진의 제도가 나라마다 서로 차이는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제도의 특성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국한하는 것이다.

1. 색출하려는 질병이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치료법이 개발된 질병만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최소한도 조기발견이 치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정확한 진단법이 개발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대상자가 받아들이기 용이한 검사여야만 한다.

5. 치료대상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질병이어야 한다.

6. 검사비용이 너무 과중하면 곤란하다.

7.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8. 검사방법의 타당성 (validity: 예민성과 특이성)이 높아야 하며 반복성 (repeatability)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게 이루는 질병을 찾기란 쉬운것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장 근로자의 집단검진인 경우는 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즉 노동력 상실을 줄인다는 전제하에 생산능률과 관련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와,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직업병의 발견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여건에 맞도록 체계화하여 법이나 규정에 명확히 정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건강진단도 우리나라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관계법규를 여러차례 수정한바, 현재는 198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규정이 관련근거이며 이 규정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 내지 48조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여건에 잘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건강진단 실시 제도라도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점은 있게 마련이다. 집단을 대상으로 빠른시일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종류의 검사를 실시하려면 그 판정결과의 신빙성이라든가, 검사성적이 함축하는 의미의 제한성 등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극단의 예로서, 신체검사 결과 건강자라는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급작히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의 납득을 위해서라도 건강진단의 의의를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충분히 주지 시킬수 있는 보건교육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에 대하여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과거에는 일차검진에서 그치고 2차검진(정밀검사)에 대한 실시규정이 없어 요주의나 의심자로 그쳐 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차검진은 어디까지나 Screening test 이므로 확진을 위한 2차검진 없이는 실제로 거의 무의미하다. 그러나 금년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 134호)에는 2차검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드디어는 일반건강진단의 실효를 거둘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고용주, 근로자, 검진기관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2차검진의 의의를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가 앞으로 일반건강진단의 의미를 살리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II.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내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은 물론 나라마다의 제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1) 채용시 검사(pre-employment examination), (2) 정기적인 일반건강진단(periodic examination), (3) 일반건강진단에서 취급하지 않으나 특별한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특수 근로자에게 보충해 실시하는 특수검진(special or supplementary examination), 그리고 (4) 질병이나 사고후 치료가 끝났을때 직장에 복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병후검사(examination after an accident or prolonged illness)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진단 실시규정에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제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건강진단은 채용시 검사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비교검토 해야 하므로, 채용시 검진의 의의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용자나 근로자, 또는 검진기관 모두에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 채용시 건강진단

산업장 신규 채용자의 건강관리는 채용시 건강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왜 채용시 건강진단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는 그 작업에 부적격한 사람을 색출하여 제외시키고, 적격한 사람만이 그 일에 취업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적격과 부적격의 구분이 지극히 어렵다. 사업장마다 그곳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의 양과 질에 합당한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우며 만들어 놓은 사업장도 지극히 드물다. 또 기준을 만들어 놓은 사업장에서도 그 기준을 늘 지킬수도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경기가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달라, 경기가 좋을때는 모집인원이 많아 기준에 미달해도 채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기준을 엄격히 지키게 된다.

특히 작업의 종류에 따라 어떤 종류의 질병 또는 이상자는 특히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직종과 부적격자의 종류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채용시 건강진단의 목적의 하나는 이와같은 병과 이상을 가진자를 찾아내는 것이나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우며 또한 응모자는 채용되고 싶어하는 일념에서 자기의 과거 病歷을 말하지 않는다.

중병이라든가 외견상 알수있는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경한것이나 당사자의 主訴를 기초로 해야 하는 질병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作業種類	禁忌가 되는 身體的條件
重筋的作業	筋肉薄弱, 脫腸, 心臟瓣膜症, 甲狀腺腫
立業	脚氣, 扁平足, 胃腸病, 內臟下垂症, 貧血症
步行作業	脚氣, 扁平足, 關節炎
高溫作業	多汗症, 脂肪過多症, 高血壓症,
寒冷作業	貧血症, 高血壓症, 氣管支炎
高壓下作業	脂肪過多症, 高血壓症, 飲酒者, 心瓣膜症, 腎臟炎
低壓下作業	內耳症, 貧血症, 高血壓症, 神經過敏症
聽覺作業	難聽症, 頭痛症
視覺作業	弱視, 亂視, 色弱, 色盲
集團作業	傳染性疾患, 腋臭多汗症, 軀遺尿
孤立作業	癩癩, 災害素質者
發塵作業	呼吸器病者, 過敏性體質
毒가스作業	呼吸器疾患, 過敏性體質, 多汗症

채용시 건강진단의 의의는 부적격자를 발견하여 제외시키는 것보다 더욱 큰 의의는 근로자 건강관리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즉 적정배치의 자료가 되며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직장에서는 직업병과 관련있는 증상이나 증후가 없었는지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후에 분쟁의 씨가 될 수 있다.

직업성 중독으로 빈혈을 일으켰을때 그 사람의 채용시 혈액소견이 없으면 어느정도의 빈혈이 어느정도의 기간에 일어났는가 확실치 않다. 소음부서에서 난청자가 생겼을때 채용시 청력을 측정해 두지 않았으면 실제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수 없다. 이와같이 채용시 자료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예가 많다.

2.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은 일정시간내에 여러 사람을 검

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검진 항목에 대해서 실시할 수 없으므로 중점적으로 꼭 알아야 할 질병이나 건강장애를 틀림없이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질병과 건강장애를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겠으나 일반건강진단 특유의 목적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즉 생산능률에 관계되는 질병의 대표적인 것은 폐결핵이며 그 밖에도 재해의 원인이 될만한 것, 즉 고도의 굴절이상등의 시력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등을 발견하도록 한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장애는 직업성 질환으로서 특수검진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거나 더 이상 질병의 악화를 막도록 한다.

끝으로 근로자 개인의 불행을 막고자 하는것에 속하는 것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당뇨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하에 일반건강진단시에는 1차건강진단과 2차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며 2차건강진단은 1차건강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각기 아래와 같다.

가. 1차건강진단 항목

- 1) 체력검사
신장, 체중, 색신, 혈액형
- 2) 체능검사
시력, 청력, 혈압
- 3) 뇨검사
뇨단백, 뇨당
- 4) 혈액검사
빈혈검사(헤마토크릿, 혈색소), 간기능검사(30세이상에서만 지오티, 지피티)
- 5) 흉부 엑스선검사(간접촬영)
- 6) 자·타각증상

- 7) 기왕력
- 8) 진찰조건
의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 9) 기타검사 등이다.

나. 2차건강진단항목

아래와 같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134호)에 정한 필요한 항목을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2차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재된 항목이외의 항목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엑스선 직접촬영, 결핵균 농축 도말검사
- 2) 순환기계질환
혈압측정, 정밀안저검사, 심전도검사, 트리가사세 라이드검사, 총 콜레스테롤검사
- 3) 간장질환
총단백검사, 혈청알부민검사, 총빌리루빈검사, 알카리포스파타제검사, 감마지티피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검사)
- 4) 신장질환
뇨침사현미경검사, 뇨소질소검사, 뇨단백, 크리아티닌검사
- 5) 빈혈증
혈색소검사, 백혈구수검사, 적혈구수검사
- 6) 당뇨질환
혈당검사, 뇨당검사
- 7) 피부질환
- 8) 기타검사

3. 특수건강진단

거의 모든 산업장 또는 직장에는 반드시 그 업종에 특유한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작업환경 및 조건은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인자로서 작용하며 그 산업에서만 특유하게 발생하는 직업병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산업장의 보건 관리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맡고 있는 산업장의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조공정에 어떠한 유해 인자가 따르는가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해인자를 고려하여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방법 및 인정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노동부, 1985)를 참고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정해야 할 것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일차검진과 정밀검사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근로자전원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첫째는 그 집단으로서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집단관리상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둘째는 그 집단으로 부터 직업병의 의심이 있는자를 찾아내어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초를 만든다.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정밀검사는 Screening test에서 발견된, 건강장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직업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건강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Screening test 만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밀검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건강관리가 잘 될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수검진의 목적은 유해환경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유소견자 발견에 있다.

이와같이 특수 건강진단이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공업화됨에 따라, 산업장수의 증가에 따르는 직업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게 됨에 있다.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서 유해업무에 관해서는 건강진단의 방법과 그 진단기준 및 건강관리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노동부가 강력히 지시하게끔 하지 않으면 유해업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현재로서는 몇가지 환경의 유해인자들에

관해서 진단방법, 진단기준등의 건강관리에 관해서 노동부지시가 있으나 실제문제로서는 개중에 직업성 질환이라는 적극적 증명도 할 수 없고, 소극적 부정도 할 수도 없으며 자각적 증상이 진단의 기준이 될 경우도 있다.

특수검진에 종사하는 실무자들도 가끔 착각에 빠진다. 즉 노동부에서 만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방법 및 인정기준”에만 의거하여 실시하면 모든 직업병은 규명되며 또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병의 확인은 일정한 기준만으로 획일화 할 수 없는 것이다. 직업병도 예외가 될수 없다. 특수검진도 2차검진에서 진단이 확인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많은 경우는 전문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서 인정기준이외의 많은 검사를 실시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이때의 문제는 고가의 진단수가이며 정부는 이경우 고가의 진단비용 부담방법을 마련해야만 특수검진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할수 있겠다.

